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소규모 공공시설 대장

[ ]소교량 [ ]세천 [ ]취입보 [ ]낙차공 [ ]농로 [ ]마을진입로

관리 번호:

1. 시설 현황

시설 명칭		관리자		대장작성일	
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		위험시설 지정일	년 월 일	위험시설 지정 고시번호	
위치(구간)	00시·군 00읍·면·동 리 번지 (시작하는 지점: 끝나는 지점:)				
제 원	연장: m, 폭: m	수혜 구역	농경지: ha, 건물: 동		
시설부속물	총 개소(유형별:)				
그 밖의 사항					

2. 시설 정비 현황

구 분	전 체 계 획	이미 시행	년	년	년	년	년	년	비 고
사업량	연장 = m 폭 = m								
사업비	백만 원								
공사기간	착공: , 준공:								
시설부속물									

비고: 1. 시설 명칭은 00소교량, 00세천, 00취입보, 00낙차공,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,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.
2. 시설 현황 중 "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"란은 관리청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 적는다.
3. 시설 현황 중 "그 밖의 사항"란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을 적는다.
가. 소교량: 날개벽 현황
나. 세천: 자연제방, 돌망태, 석축, 호안블록 등의 현황
다. 취입보 및 낙차공: 어도 현황
라. 농로 및 마을진입로: 정비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토지 필지 수 및 면적
4. 세천 내에 소교량, 취입보, 낙차공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"시설부속물"란에 적는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